

특허청

발명으로 만드는 일자리,
특허로 더하는 행복

보도자료

www.kipo.go.k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문 의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인력과	과 장 이춘무	042-481-8172
		사무관 이동훈	042-481-8241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공공누리 제2유형(출처표시+상업적금지)

2017년 9월 15일(금)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9월 14일(목)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9.15)으로 발명교육의 체계적 지원과**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명교육법’)이 2017년 9월 15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발명교육법」은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하여 발명교육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에 발명교육을 반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발명교육법」 시행령은 ▲발명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발명교육협의회의 설치·운영 ▲발명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발명교육 개발원의 지정요건 규정 등을 골자로 한다.

발명교육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특허청장은 교육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발명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특허청장 및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다.

각 시·도 교육청은 이에 따라 지역 교육여건 및 제반환경에 따른 연도별 발명교육을 시행하게 된다.

발명교육협의회 설치·운영

발명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특허청장소속으로 발명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함께 기본계획을 협의함으로써 체계적인 발명교육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발명교육센터의 설치·운영

특허청과 시·도교육청 등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발명교육센터(전국 199개)에 대해 발명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발명지도교사의 연수, 교육실적 자료의 작성·관리 등 관련규정을 재정비하였다. 이로써 일선 학교에서 발명교육이 체계적으로 운영·관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발명교육개발원 지정

발명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지원을 위하여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요건을 규정하였다. 발명교육개발원은 발명교육 과정, 정책 등의 체계적인 연구와 관련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특허청 김태만 산업재산정책국장은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발명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특허청, 교육부, 시·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함께 발명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 점은 매우 의미가 크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인력과 사무관 이동훈(☎ 042-481-8241)에게 연락 바랍니다.

1 발명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2조]

□ 제정이유

- 법 제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기본계획의 수립 시 협의해야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그 밖에 발명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기본계획 변경 시 ‘협의를 필요 없는 경미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제정내용

- 기본계획의 수립 시 협의하여야 하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을 규정
 -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등 총 8개 중앙행정 기관장으로 구성
-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그 밖에 발명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 초·중·고, 대학, 기업별 정보체계 구축,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발명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
- 발명교육 기본계획의 변경 관련 ‘협의를 필요 없는 경미한 사항’ 규정
 - 기본계획의 총사업비의 규모를 100분의 10범위에서 변경, 법령 개정 등으로 그 내용을 반영, 오기, 누락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을 반영

□ 기대효과

- 중장기(5개년) 발명교육의 기본계획 수립으로 정부차원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 제정(안)

제 정 안

제2조(발명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6. 고용노동부장관
7. 여성가족부장관
8. 중소벤처기업부장관
9. 그 밖에 특허청장이 발명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에 따른 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14조에 따른 국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발명교육의 교육과정 및 교과에 관한 사항

③ 법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발명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총사업비의 규모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명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제정이유

- 법 제4조에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시행계획의 수립 시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시행계획의 수립 기한 등을 반영하기 위함

□ 제정내용

- 시행계획 수립 시,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
 - 초·중·고등학교, 대학 및 대학원, 기업의 발명교육에 관한 사항을 반영
- 시행계획의 수립 기한을 규정
 - 특허청장 및 교육감은 발명교육 시행계획을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함
-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통보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
 -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특허청장과 소속 학교 및 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

□ 기대효과

- 특허청장 및 시·도교육감이 교육여건 및 제반환경에 따른 연도별 발명교육을 시행

□ 제정(안)

제 정 안

제3조(발명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특허청장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발명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에는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초·중·고등학교 발명교육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발명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시책
3. 발명교육 전문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4. 발명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
5. 대학 및 대학원의 발명교육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재산권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특허청장 및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특허청과 소속 학교 및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정이유

- 특허청장이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허청장 소속으로 발명교육협의회를 두도록 함

□ 제정내용

- 발명교육협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을 규정
 -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성과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특허청장이 발명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반영
- 협의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방법 등 협의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위원회는 특허청 차장(위원장)을 포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총 15인 이내로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이 특허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간사 1인을 지명하도록 규정

□ 기대효과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발명교육 관계자 등으로 기본계획을 협의함으로써 체계적인 발명교육 정책 추진의 기반 마련

□ 제정(안)

제 정 안

제4조(발명교육협의회의 설치) ① 특허청장이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허청장 소속으로 발명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 성과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 성과에 관한 사항
3.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허청장이 발명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특허청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특허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특허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협의회에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특허청장이 특허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정 이유

- 특허청과 시·도교육청 등이 공동으로 지원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발명교육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임
- 「발명진흥법」 제9조의 내용이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이동됨에 따라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의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함

□ 제정 내용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센터를 설치하려는 경우 명칭, 목적, 위치 등이 포함된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
- 특허청장은 발명교육센터에 지도교사에 대한 교육 및 연수, 발명교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발명교육센터에는 2급 이상의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지도교사를 두고, 매월 일정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 발명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대한 교육실적 자료를 작성·관리하도록 규정

□ 기대효과

- 발명교육센터의 설치·운영, 지도교사, 교육실적 자료의 작성·관리 등 법령의 재정비

□ 제정(안)

제 정 안

제7조(발명교육센터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발명교육센터(이하 “발명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특허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위치
4. 운영 규정
5. 지도교사 확보 계획
6. 발명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 현황 및 확보계획
7. 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 및 재정운영계획
8. 설치·운영 예정일
9. 그 밖에 발명교육센터의 설치와 관련하여 특허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발명교육센터의 운영 지원 등) 특허청장은 발명교육센터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발명교육센터의 설치·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발명교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발명교육용 교재 및 프로그램의 지원
4. 지도교사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지원
5. 그 밖에 발명교육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

제9조(발명교육센터의 지도교사) ① 발명교육센터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2급 이상의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지도교사를 두며,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발명교육센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발명교육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발명교육센터 교육실적 자료의 작성·관리 등) ① 발명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발명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대한 교육실적 자료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발명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발명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교육실적 자료를 매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 학년 말일까지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실적 자료를 송부받은 학교의 장은 그 내용을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적어야 한다.

□ 제정이유

- 법 제11조에서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요건 및 지정취소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세부요건 등을 마련하기 위함

□ 제정내용

-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과 관련한 세부 절차를 규정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비영리법인·단체이고, 발명교육관련 실적(3년), 사업에 필요한 시설, 장비, 전문 조직·인력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정받으려는 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특허청장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
- 발명교육개발원이 지정취소와 관련한 세부절차를 규정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지정받은 단체에게 청문기회를 부여 후,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하여 대상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

□ 기대효과

- 관련 교육과정, 정책 등의 체계적 연구와 발명교육 관련 교원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

□ 제정(안)

제 정 안

제11조(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발명교육개발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일 것
2. 발명교육 업무를 수행할 인력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확보할 것. 이 경우 전담조직에는 발명교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4. 3년 이상의 발명교육 연구·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실적이 있을 것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발명교육개발원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발명교육개발원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교육개발원의 운영계획
2. 발명교육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현황
3. 시설·장비 보유 현황
4. 최근 3년간의 발명교육 연구·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실적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특허청장은 발명교육개발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발명교육개발원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발명교육개발원이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취소) ① 특허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정이 취소된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